

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!



민간 등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지원하는 경비

#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

주민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!

올바른 보조금 사용 +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

## · 신고대상

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

## · 신고방법

보조금 지원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 → 홈페이지, 방문 또는 우편, 전화, 팩스 등  
※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센터(국민권익위원회)를 통한 신고도 가능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 110 또는 1398)

## · 신고요령

신고자 인적사항, 신고 취지 및 내용 기재,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제시 등

## · 신고사건 처리절차



### ※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

-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 위조,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- 허위 견적서·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물품구입비나 공사비 등 부풀려 보조금 횡령·편취
-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
- 직원 허위 등록 등으로 운영비(인건비) 과다 청구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제공·양도·대여 등

## · 신고포상금 지급대상

신고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

## · 신고포상금 지급기준

부정수급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%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

### ※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

-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
-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
-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
-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
- 거짓사실 신고,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

※ 신고 및 포상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감사 부서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신고자는 **비밀보장·신분보장·신변보호**를 통해 어떠한 **불이익**도 받지 않습니다.

